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09. 7. 14.

행정위원회

1. 審 査 經 過

가. 제출일자 : 2009년 6월 23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09년 7월 1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46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(2009. 7. 2) 상정 의결

2. 提 案 說 明 의 要 旨 (제안설명자 : 보건소장 엄혜숙)

가. 제안이유

-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의 예방·조기발견·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수행하는 정신보건센터에 대하여 서울시 대부분의 구에서 기존의 지참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바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규범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「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정신보건센터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2조)
 - 명칭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
 - 위치는 영등포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정신보건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3조)
 - 정신보건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
 -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 조정
 - 대상자 발견·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, 연계사업
 -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

- 사례관리(가정방문·내소상담 등)
- 정신질환자살 및 알코올 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사업
-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등의 교육 및 모임지원 육성
-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
-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
-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4조)
 -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토록 정함
 -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함.
-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5조)
 - 구청장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수탁자는 구청 기준에 적합하게 자체 운영규정을 작성 준수토록 정함.
- 수탁자의 의무 사항을 규정(안 제6조)
 -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, 정신건강 관리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정함.
 - 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정함.
 - 수탁자는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도록 정함.
-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7조)
 -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.
-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8조)
 - 구청장은 수탁자의 위탁사무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하고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 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함.
-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9조)
 - 수탁자가 제6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
 -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

- 그 밖에 공익상 위락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위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함.
-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0조)
 -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
 -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
-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1조부터 제12조)
 -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토록 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함.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권오운)

-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, 사례관리, 정신질환자살 및 알코올 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사업, 정신질환자가족 등의 교육 및 모임지원 육성 사업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·조기발견·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등 지역보건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고, 또한 정신보건법 제13조,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 시설과 연계체계 구축, 정신질환의 예방, 정신질환자의 발견·상담·진료·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,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.

4. 審査結課：原案可決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22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6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의 예방·조기발견·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정신보건센터에 대하여 서울시 대부분의 구에서 기존의 지침에 의거 운영하고 있었는 바, 조례제정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된 정신보건사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“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2조)

- 1) 명칭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
- 2) 위치는 영등포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나. 정신보건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3조)

- 1) 정신보건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
- 2)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 조정
- 3) 대상자(만성정신질환자, 알코올의존대상자 등) 발견·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, 연계사업
- 4)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
- 5) 사례관리(가정방문/내소상담/전화·사이버상담을 통한 사례관리)
- 6) 정신질환·자살 및 알코올 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사업
- 7)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등의 교육 및 모임지원 육성
- 8)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
- 9)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

다.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4조)

- 1)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토록 정함

2)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함.

라.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5조)

구청장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수탁자는 구청 기준에 적합하게 자체 운영규정을 작성 준수토록 정함

마. 수탁자의 의무 사항을 규정(안 제6조)

- 1)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, 정신건강 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정함.
- 2) 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정함
- 3) 수탁자는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도록 정함.

바.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7조)

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

사.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8조)

구청장은 수탁자의 위탁사무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하고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 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함

아.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9조)

- 1) 수탁자가 제6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
- 2)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
- 3)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함

자.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0조)

- 1)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
- 2)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

차.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1조부터 제12조)

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토록 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「지역보건법」 제9조(보건소의업무), 「정신보건법」 제13조(정신보건사업)

나. 예산조치 : 2009년 403,520천원 예산반영

다. 합의사항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 [2009. 4.23 ~ 2009. 5.13] 결과 : 의견 없음

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붙임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9조, 「정신보건법」 제13조, 제1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① 센터의 명칭은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(이하 “정신보건센터”라 한다)”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정신보건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정신보건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
2.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 조정
3. 대상자(만성정신질환자,알코올의존대상자 등) 발견·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, 연계사업
4.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
5. 사례관리(가정방문/내소상담/전화·사이버상담을 통한 사례관리)
6. 정신질환·자살 및 알코올 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사업
7. 정신질환자 가족 등의 교육 및 모임지원 육성
8.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
9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

제4조(위탁운영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정신보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보건시설,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, 위탁기간, 위탁조건, 관리책임,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(운영규정) ① 구청장은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, 인사, 보수, 재산 및 물품관리, 안전관리,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,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자체 운영규정을 작성·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, 정신건강 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위탁 할 수 없다.

③ 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.

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제5조에 따른 운영규정 및 위탁협약사항,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.

제7조(운영비 지원)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지도 및 감독)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시설,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·조사 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9조(위탁의 취소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제6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
2.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
3.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

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, 각종 시설, 자료,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 운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0조(이용제한)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
2.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탁운영에 관하여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보조금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 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제 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한다.